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 금지 등〉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45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현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11. 2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0,150건,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발률은 43.6%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수준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되어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 수준이 높은 반면,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실행을 촉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1조에 따른 교사범 및 제32조에 의한 중범의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교사 및 방조행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음주운전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율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 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③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에 동승하는 행위를 하여 음주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 ----- ----- ----- -----제44조의2, 제45조-----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방조 등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서의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3.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한 사람
2.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2023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건수는 13,042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198,296건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음¹⁾. 2023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 중 혼자 운전한 비율은 69%, 가족 외의 동승자가 있는 비율은 18%, 가족인 동승자가 있는 비율은 13%로 조사됨²⁾.

현행 「형법」 제31조와 제32조³⁾는 방조범과 교사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동승자가 음주운전의 방조범, 교사범이 될 수 있음.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을 강화 방안에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포함하고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혹은 공동정범으로 입건되고,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했던 경우, 지휘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한 경우도 방조범 입건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⁴⁾.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방조범의 검거 건수는 232건이고 음주운전 교사범의 검거 건수는 130건임.

1) 손여옥, 황하기, “데이터로 보는 음주운전”, 국회도서관 Data&Law 2024-6호, 2024. 7. 1.

2) 전용식, “동승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 포커스 13면, 2024

3)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중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중범으로 처벌한다.

② 중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4) 출처: KTV 국민방송 2016. 4. 24.자 보도, “검·경, 음주운전 처벌·단속 강화한다”

<연도별 음주운전 방조범의 검거 건수>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잠정)	합계
방조범 검거 건수	60건	47건	58건	46건	21건	232건
교사범 검거 건수	45건	33건	33건	16건	13건	140건

※자료: 경찰청

개정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동승자의 방조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음주운전 재범률(2회 이상 적발)과 타인 동승 사고 건수의 변화가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사고 발생에 동승자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고, 동승자 처벌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⁵⁾.

해외 입법례로 일본의 도로교통법 제65조제2항은 취기가 있는 자로서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차량의 운전자가 술기운이 있는 것을 알면서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자기를 운송할 것을 요구하

5) 전용식, “동승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 포커스 9면, 2024

거나 의뢰하여 해당 운전자가 음주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⁶⁾.

다만, 개정안 제44조의2제1호의 자동차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할 수 있고, 개정안 제44조의2제2호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하는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의 결의를 하게 하여 범죄를 실행시키는 행위로 평가되어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교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148조의2제4항제1호는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 권유·독려 행위가 「형법」에 따른 음주운전 교사범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정형⁷⁾ 보다 낮은 수준임. 이 경우 음주운전 권유·독려 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권유·독려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음주운전 교사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일본법령정보 <https://laws.e-gov.go.jp/law/335AC0000000105/>

7) 음주운전의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제2호·제3호)

혈중 알코올 농도	법정형
0.2 %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사범에 대한 법정형은 「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범과 동일함.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참고로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동승자 처벌이 음주운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345